

[일련번호 : 1]

# 경기도체육회

## 기관경고

[제 목] 국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소 속 기 관] 김포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김포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에서는 「김포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및 「김포시체육회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기도체육회로부터 국·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프로그램 사업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정관」 제39조(재산의구분), 제40조(재원), 제45조(예산편성 및 결산) 및 「회계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국도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관리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의 「정관」에 따르면 재산과 재원을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의 지원·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예산편성 및 결산의 기능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체육회의 「회계규정」에는 회계를 건전하고 공정·타당하게 운영하기 위해 모든 수입과 지출을 표기하도록 되어있다.

체육회는 2021 ~ 2023년도 이사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비의 예산은 심의·의결을 하였으나 국·도비 예산은 심의·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대의원총회에서는 시비는 물론이고 국도비의 결산을 심의·의결하였다.

본 처분사항에 대해 경기도체육회에서는 시군체육회 정기종합감사에서 도출된 공통지적사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조 치 사 항] 김포시체육회장은

2024년도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기 바라며 2024년도 국·도비 예산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2]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정관 최신화(개정) 관리 미흡

[소 속 기 관] 김포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김포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김포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하고 이에 따라 모든 사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정관은 스포츠평정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의결 후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결하고 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 정관 제7조(권리와 의무) 및 제51조(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따르면 체육회는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정관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sup>1)</sup>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은 20\*\*년 \*월에 제정되어 20\*\*년 \*월까지 1회 개정된 이후로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관을 관리해야 됨에도

1) 경기도체육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51조(정관의 제정 및 개정) ① 시·군체육회는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에 따라 정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불구하고 2021년도 특수법인 전환에 따른 정관을 제정한 이후 정관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본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본회 정관 및 제규정 사항에 대해 안내<sup>2)</sup>하여 시군체육회의 정관 및 제규정이 신속하게 개정하고 체육회 운영에 규정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이사회, 대의원총회 등을 통해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20\*\*년도 \*월에 개정된 상태로 사용하고 있다.

### [조 치 사 항] 김포시체육회장은

본회 「시·군체육회 규정」 제51조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고 적극적인 업무를 실시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관을 개정한 후 본회 공정 감사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경기도체육회 지역진흥팀-853(2023.03.06.) / 지역지원팀-716(2024.03.04.)

[일련번호 : 3]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김포시종목단체 관리단체 관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김포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김포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김포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따라 57개 회원단체를 조직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배구 등 총 11개의 관리단체를 보유하고 있었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회원단체는 김포시 지역 내 특정 종목의 활동과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정관」, 「김포시체육회 종목단체규정」(이하 “시종목단체규정”이라 한다.) 「김포시체육회 가입 및 탈퇴규정」(이하 “가입탈퇴규정”이라 한다.), 「김포시체육회 관리단체 운영규정」(이하 “관리단체규정”이라 한다.) 등에 따라 회원단체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표1]과 같이 총 11개의 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함에 있어 「정관」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sup>3)</sup>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사유가 발생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관리단체를 지정해야하나 대의원총회를 통해 심

3) 제8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본회는 회원단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본회가 회원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단체가 소속된 경기도체육회 회원종목단체에 이를 알리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3.>

의·의결하였다.

그리고 체육회는 시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관리단체 지정일, 지정사유 등 정보를 갖추지 못하였고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면서도 「관리단체규정」 제7조(위원회의 기능)<sup>4)</sup>에 따라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등 관리단체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또한 「경기도체육회 가입 및 탈퇴 규정」 제7조(강등 및 제명)에 따르면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로부터 2년간 관리단체 지정해제가 되지 못한 경우 제명을 할 수 있도록 명시 되어있으나 체육회 「가입탈퇴규정」에는 2년간 관리단체 지정해제에 대한 문구가 없고 그로 인해 관리단체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표1] 김포시체육회 관리단체 현황**

순	종목	지정일	회의체(심의의결)	비고
1	배구	-	대의원총회	
2	등산	-		
3	패러글라이딩	-		
4	국학기공	-		
5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		
6	체조	20**.**.**		
7	피구	20**.**.**		
8	플라잉디스크	20**.**.**		
9	자전거	20**.**.**		
10	줄다리기	-		
11	무기술	-		

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김포시종목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2.6.16.>

1. 대의원총회 기능에 관한 사항
2. 이사회 기능에 관한 사항
3. 법제·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국의 사무집행에 관한 사항
5. 김포시종목단체 규약에 규정된 사업 및 관련 모든사항 <개정 2022.6.16.>

**[조 치 사 항] 김포시체육회장은**

체계적인 관리단체 운영을 위해 상위 규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규정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단체 정상화 또는 제명 등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여 그 결과를 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 경기도체육회

## 주의조치

[제 목] 계약·회계업무처리 부적정

[소 속 기 관] 김포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김포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도비를 비롯한 모든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의사결정을 시작으로 원인행위를 결정하고 지출 할 때 적법한 절차와 증빙을 근거로 회계를 처리하고 관리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보조금 집행 및 관리에 있어 「회계규정」(이하 “회계규정”이라 한다.) 제9조(예산운영의 기본원칙), 제42조(지출원인 행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sup>5)</sup>, 제32조(세금계산서 등)<sup>6)</sup>,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sup>7)</sup>, 「김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5) 「부가가치세법」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⑧ “생략”

7) 「보조금 관리기준」 제11조(지방보조금 사용 방법) ① “생략”

② 지방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김포시규칙”이라 한다.) 에 의거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공사·물품·용역이 필요할 시에는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절차에 맞게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행위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회계관리를 해야 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 가. 회계처리절차 미흡

체육회는 국·도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증빙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원인행위에 필요한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서류를 증빙하여 지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물품검수조서 등을 받지 않았고 폐업한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아 증빙 처리하는 지출서류 증빙에 부실이 발견되었다.

또한 사업 담당자별 서류를 증빙하는 방법이 기준 없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표적으로 타견적서를 지출금액에 상관없이 자율적으로 증빙서류를 갖추는 등 애매모호하게 운영하고 있다.

**[표1] 지출 증빙서류 부실**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	증빙서류
1	2021 *****	사무용품	***,000	증빙사진, 타견적

순	사업명	지출내역	금액	증빙서류
2	2021 ***** *	시설사용료	***,000	시설이용(내역)확인서
3	2021 ***** *	시설사용료	***,000	시설이용(내역)확인서
4	2022 ***** **	방역물품비	*,***,000	타견적서
5	2022 ***** **	방역물품비	***,000	타견적서
6	2022 ***** **	운동용품	*,***,000	타견적서
7	2022 ***** **	홍보비	*,***,000	타견적서
8	2022 ***** ***	용품비	*,***,000	타견적서
9	2023 ***** ****	테니스공	*,***,000	인수증
10	2023 ***** ****	육상용품	*,***,000	인수증
11	2023 ***** ****	태권도용품	*,***,000	인수증, 계좌이체증
12	2023 ***** ****	테이블	***,000	타견적 폐업업체
13	2023 ***** ****	음향	*,***,000	타견적 폐업업체
14	2023 ***** ****	현수막	***,000	증빙사진
15	2023 ***** ****	숙박	*,***,000	숙박명단. 출전결과
16	2023 ***** ****	테니스공	*,***,000	견적, 타견적, 인수증
17	2023 ***** ****	대관료	*,***,000	시설사용내역, 명세서
18	2023 ***** ****	대관료	***,000	시설사용내역, 명세서
19	2023 ***** ****	대관료	***,000	시설사용내역, 명세서
20	2023 ***** ****	대관료	***,000	시설사용내역, 명세서
21	2023 ***** ****	대관료	***,000	시설사용내역, 명세서
22	2023 ***** ****	대관료	***,000	시설사용내역, 명세서
23	2023 ***** ****	팀등록비	***,000	팀등록확인서

## 나. 계약처리절차 부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용품구매 등 집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추정금액 2000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용역을 실시할 경우

수의계약을 실시하고 확정된 사업계획에서 대상별·시기별로 분할하여 구매하여서는 안된다.

하지만 체육회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보조금 사업에서 계획(안)에 따라 운영하면서 용품을 구매할 때 유사한 시기에 독점판매자격, 특허권 등의 특수성이 없거나 특수성을 증빙하지 못한 용품을 서로 다른 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등 분할구매가 의심 된다.

그리고 2021년도 \*\*\*\*\*에 선정된 학교운동용품 지원 시 업체를 통해 받은 각서에 울산광역시도 기재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체육회 도장을 찍는 등 계약절차에 있어 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을 운영하면서 훈련, 대회출전 등 스포츠안전재단을 통해 보험가입을 하면서 계약이 완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험가입증명서가 누락되어 보험가입이 확정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표2] 계약처리절차 및 분할구매**

순	사업명	주요내용	지출내역	업체명	금액
1	2023 *****	분할구매	테니스공	앨*****	2,500,000
2			육상용품	런*****	2,500,000
3			태권도용품	S*****	2,500,000
4	2023 ***** * (*****)	분할구매	리본 등	스*****	1,200,000
5			슈즈	클*****	304,000
6	2023 ***** * (*****)	보험가입증서X	보험계약	스*****	65,340
7		보험가입증서X	보험계약	스*****	115,500
8		보험가입증서X	보험계약	스*****	16,500
9	2023 ***** *	수의계약 미체결	수영용품	예*****	2,800,000

순	사업명	주요내용	지출내역	업체명	금액
10	2021 ***** **	수의계약 미체결	방역용품	마*****	10,000,000
11	2021 ***** ***	강사계약서 사용자 직인 X	강사계약	강사	
12	2021 ***** ****	수의계약 증빙서류 미검토	학교용품지원	파*****	4,800,000

#### 다. 보조금 집행 및 운영 미흡

2023년도 \*\*\*\*\*에 선정된 체육회는 댄스스포츠대회를 개최하면서 선정단체인 김포시체육회가 아닌 김포시\*\*\*\*\*연맹(이하 “\*\*연맹”라 한다) 을 통해 보조금 집행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일임한 것으로 보이는 지출증빙이 다수 존재하였다.

그 이유는 시설, 집기류 등 계약서를 맺을 때 \*\*연맹의 명의로 계약을 실시하였고 견적, 타견적 등도 댄스연맹의 명의로 업체를 통해 발급된 것을 증빙서류로 확인했다.

또한 지출을 할 때 내부품의와 지출결의서를 찾아볼 수 없었고 보조금은 김포시체육회가 계좌이체한 후 업체를 통해 김포시체육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보조금 집행에 있어 [표3]과 같이 선정단체와 증빙서류가 불일치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표3] 보조금 집행 및 운영 미흡**

순	사업명	지출내역	업체명	금액	비고
1	2023 ***** (*****)	무대설치	두*****	*,***,000	
2		현수막	엠*****	*,***,000	
3		테이블 등	행*****	***,000	
4		음향	고*****	*,***,000	
5		채점시스템	댄*****	*,***,000	

**[조 치 사 항] 김포시체육회장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체육회 회계규정 등을 근거로 체계적이고 청렴한 보조금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회성 교육이 아닌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2021년도 ~ 2023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서류 보충하고 체육회의 보조금 회계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 경기도체육회

## 개선조치

[제 목] 회의체와 위원회 기능중복 및 운영 미흡

[소 속 기 관] 김포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김포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김포시로 부터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로부터 각종 사업비 등을 지원받아 김포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정법인단체이며 「김포시체육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단체를 운영해야 한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체육회는 「정관」 제4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육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대의원총회를 구성하고 임원을 선임하여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회의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사의 경우 「정관」 제17조(이사의 구성 및 기능) 및 제22조(임원)에 따라 임원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제11조(총회의 기능) 및 제17조(이사의 구성 및 기능)에서 정한 기능에 따라 부의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해야 한다. 또한, 민법 제32조 및 제49조에서는 ‘이사’의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비등기 이사’의 경우 체육회 편의상 직함만

을 부여하여 이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정관」 제37조(스포츠공정위원회)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3조(기능)에 따라 각종 규정의 제개정시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 또는 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하며,

또한 ‘징계’ 의결시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9조(출석요구) 및 제30조(심문과 진술권)에 따라 징계혐의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기 원하지 아니할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서면’으로 의결하였고, 체육회 직원에 대하여 동 규정 제25조(징계사유 및 대상) 제3항에 의거,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아닌 ‘인사위원회’에서 조치했어야 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이사회, 대의원총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기능과 절차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운영 해야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다.

#### 가.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체육회는 정관 제17조에 따라, 분과위원장을 이사회의 구성으로 정하여 임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나, 동 정관 제22조(임원)에서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외 별도의 분과위원장의 수를 정하지 않고 현재 9명의 분과위원장을 두어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21~2023년도 ‘정기이사회 회의서류’상 체육회 정관에서 규

정하고 있지 않은 ‘고문’, ‘자문위원’을 체육회 이사현황에 포함하여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으며,

특히 부회장, 이사의 경우 ‘비등기’ 임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기 종합감사 제출자료) 2021~2023년도 5차례의 정기 및 임시이사회를 개최시에도 비등기 임원의 참여와 의결행사가 상당히 의심된다.

**[표1] 2021~2023년도 체육회 이사회 개최현황**

구 분	회의방식	회의자료*	개최공문**	이사 수	비 고
2021	서면	120명	100명	<b>74명</b>	정기이사회
2021	서면	-	55명	<b>42명</b>	
2022	서면	107명	99명	<b>74명</b>	정기이사회
2022	서면	107명	51명	<b>30명</b>	
2023	대면	123명	116명	<b>87명</b>	정기이사회

\* 회의자료상 체육회 이사현황

\*\*개최공문상 대상

## 나. 각종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체육회는 2022년 정기이사회 안건 중 김포시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안)등 총 3건의 규정 제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바 있으나,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정(안)’의 경우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부의안건으로 상정하였다.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하여는, 2022년도 3차례의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2건은 서면으로 1건은 대면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중 징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또한 2건은 서면으로, 1건은 대면회의의 방식으로 의결하여 징계혐의자에 대한 충분한 진술권 부여 절차가 결여된채 운영된 바 있으며, 2022년 7월경 김포시로부터 징계



요청을 받은 3명의 직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야 함에도, 스포츠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또한, 체육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이사) 등으로 내부인사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표 2]과 같이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의 기능을 중복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2] 김포시체육회 정관상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 기능**

이사회	총회	운영위원회
<p>제1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분과위원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p> <p>②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lt;개정 2022.9.23.&gt;</p> <p><b>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b></p> <p><b>2. 정관의 제정 및 개정</b></p> <p>3. 기본재산의 편입에 관한 사항</p> <p><b>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b></p> <p>5. 사무국장의 임면동의</p> <p>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p> <p>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p> <p><b>8. 준회원단체·인정단체의 가입승인, 강등 및 제명</b> &lt;개정 2022.9.23.&gt;</p> <p>9. 그 밖에 중요사항</p>	<p>제11조(총회의 기능) 본회의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1. 본회의 해산 및 <b>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b></p> <p><b>2. 정회원단체의 가입, 강등 및 제명</b></p> <p>3. 임원의 선임(사무국장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해임에 관한 사항</p> <p><b>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b></p> <p>5. 그 밖의 중요 사항</p>	<p>제4조(기능) 위원회는 본회 정관 제36조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b>1.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b></p> <p><b>2. 예산안(보조금, 이사회비) 및 결산에 관한 사항</b></p> <p><b>3. 규정 제정 및 개정</b></p> <p><b>4. 가맹단체의 조정 및 통할</b></p> <p><b>5.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b></p> <p>6.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p> <p>7. 사무국의 지휘 감독</p> <p>8. 이사회 부의사항의 작성 상정</p> <p>9. 사무국 직제 및 사무규정 승인</p> <p>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p>

체육회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안건 승인 후 이사회 또는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절차로 운영하였다.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표 3]의 안건은 체육회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총회와 이사회의 고유의 기능과 상당히 중복되어 있으며, 특히 체육회 임원의 해임여부는 ‘총회’의 고유 기능임에도 운영위원회 심의 후 총회에서는 안건으로 상정이 안된 부분도 확인되었다.

**[표 3] 2021~2023년도 운영위원회 심의안건**

구 분	심 의 안 건
2021년	① '20 사업실적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 ② '21 주요사업 계획(안) ③ 사무국 운영규정 개정(안) ④ 부실이사 정리 및 결손처리(안) ⑤ 가맹경기단체 인준보고 ⑥ 가맹경기단체 관리단체 등록(안) ⑦ 이사회 서면결의(안) ⑧ '21 세입·세출 예산승인(안)
2022년	① '21 사업실적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 보고 ② '22 사업 계획(안) ③ 이사해촉 및 결손처리(안) ④ 이사 선임(안) ⑤ 2022 이사회 개최(안) ⑥ '22세입·세출 예산승인(안)
2023년	① '22 사업결과 및 세입·세출 결산(안) ② 회비미납에 따른 결손처리(안) ③ 체육회 이사 선임(안) ④ 인정단체 가입승인(안) ⑤ 김포시체육회 사무국장 임명동의(안) ⑥ '23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조 치 사 항] 김포시체육회장은**

- 이사회, 대의원총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재정비하시기 바라며, 회의체의 기능의 권한을 침해할수 있는 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정을 개정하고 각 회의체(이사회, 총회)의 역할이 강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절차에 준하지 않고 제개정된 규정에 대하여는 「정관」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등)에 의거, 재개정하시기 바라며, 향후 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 경기도체육회

## 권고조치

[제 목] 공직유관단체 미등록 및 이해충돌방지제도 미운영

[소 속 기 관] 김포시체육회

[내 용]

### 1. 업무개요

김포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지방체육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김포시로부터 사무국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 경기도체육회(이하 “본회”라 한다.)과 김포시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김포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을 위해 활동하는 공공성을 지닌 법정법인단체이다.

### 2. 관련법령 및 판단기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규모, 임원선임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2(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제1항제3호에 의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등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체육회는 [표1]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보조를 받는 단체이지만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지정 및 인사혁신처장이 고시하는 공직유관단체로서 지위를 갖고 있지 않다.

**[표1] 김포시체육회 결산현황(2021~2023년)**

(단위:천원)

재 원 별	2023년 결산	2022년 결산	2021년 결산
국비	***,305	***,059	***,149
도비	***,433	***,573	***,646
도교육청	***,380	***,079	***,454
시비	*,***,434	*,***,068	*,***,879

※ 김포시체육회 정기종합감사 수감자료 결산 현황 재구성

이에 따라 체육회는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내용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 [조 치 사 항] 김포시체육회장은

기관의 공정성과 공공성 담보를 위해 주무관청인 김포시청 체육담당 부서 등과 업무연찬을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지정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지정 이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기관에 맞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수립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